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20 선고 2021가단74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호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4. 21. 접수 제25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소외 C, 소외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1가소2055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5. 16. 'D에게, E는 18,000,000원, C은 E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1.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선행 판결에 따른 D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2019. 6. 4. 선행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2019. 6. 8. C에게 승계집행문등본이 송달되었다.

다. C은 2021. 4.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1. 4. 21.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5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19,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에 대하여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은 선행판결 확정일인 2002. 6. 15.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선행판결이 2002. 6. 15.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1. 6. 30. C을 채무자, F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58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1. 7. 6. 제3채무자인 F 주식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부친이 신축한 것으로 사실상 상속재산에 포함될 뿐 C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0139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반면, 피고의 부친이 그의 노력과 비용으로 위 부동산을 신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C의 채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C이 현재 고령에 문맹이라는 사정은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아

목 록

부산 사하구 G 지상

블록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 단독주택

1 내지 3층 각 44.55㎡. 끝.

